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87,536,872	38,626,106
일반회계	1,057,644,287	31,729,329
특별회계	229,892,585	6,896,778
공기업특별회계	149,138,858	4,474,16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95,770	44,8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466,635	2,323,9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176,453	2,105,294
기타특별회계	80,753,727	2,422,612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360,261	130,808
수질개선특별회계	12,162,889	364,88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199,276	95,978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11	15,00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87,091	2,61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68,354	74,05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721,533	141,646
주택사업특별회계	85,999	2,58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0,747,775	1,522,433
지하수특별회계	2,420,538	72,616

제 2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10,106천원으로 한다.